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22 발의연월일: 2024. 10. 8.

발 의 자: 송석준 • 박준태 • 조배숙

박충권 · 김예지 · 성일종

유상범 • 김선교 • 이종배

박대출 · 장동혁 · 김성원

곽규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

다만, 갱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 근대적인 어감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권친화적인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기관이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도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한편, 법무보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무보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 재범방지 및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요청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기존의 갱생을 법무보호로 수정하고,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 단에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갱생보호(更生保護)"를 "법무보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갱생보호"를 각각 "법무보호"로, "자립갱생을"을 "사회복귀를"로 한다.

제4조 중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무보호

제18조제1항 중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갱생보호사업자"를 "법무보호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제55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법무보호지원이 제공된 사람의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보호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그 법무보호지원이 개시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기관에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5(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 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열람, 전산 망 이용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제목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중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한다.

제65조의 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9호 중 "갱생보호"를 각각 "법무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갱생보호"를 각각 "법무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갱생보호시설"을 "법무보호시설"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중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갱생보호"를 각각 "법무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한다.

제5장제2절의 제목 "갱생보호사업자"를 "법무보호사업자"로 한다.

제67조의 제목·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갱생보호사업"을 각각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갱생보호사업"을 각각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제69조 중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같은 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갱생보호사업"을 각각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제70조의2 중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제71조 중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본문 중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1호 중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제8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갱생보호제도"를 "법무보호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1. 법무보호

제85조제1항 중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제86조의 제목 중 "갱생보호기금"을 "법무보호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사업"으로. "갱생보호기금"을 "법무

보호기금"으로 한다.

제5장제4절의 제목 중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제95조 중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전단 중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갱생보호사업"을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제98조제2항 중 "갱생보호회"를 "법무보호회"로 한다.

제99조제1호 및 제2호 중 "갱생보호사업"을 각각 "법무보호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제1조(목적)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	
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受講) 및 <u>갱생보호(更生保護)</u>	<u>법무보호</u>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	
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	
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자) ① • ② (생 략)	제3조(대상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갱생보호</u> 를 받을 사람(이하	③ 법무보호
" <u>갱생보호</u> 대상자"라 한다)은	법무보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	
은 사람으로서 <u>자립갱생을</u> 위	<u>사회복귀를</u>
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	제4조(운영의 기준)

회봉사	, 수강	또는	<u> 갱생</u> :	<u>보호</u> 는
해당	대상자의	의 교회	ŀ, 개·	선 및
범죄예	방을 위	리하여	필요청	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0]=	루어져
야 하	며, 대성	} 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	태, 가	정환경,	교우	-관계,
그 밖	의 모든	는 사정	을 경	충분히
고려하	여 가진	상 적합	한 병	방법으
로 실기	시되어이	ㅑ 한다.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u>갱</u> 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 (생략)

-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생략)
 - 2. 갱생보호
 - 3. ~ 6. (생략)
-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 관찰활동과 <u>갱생보호사업</u>을 지 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

		법무보호
제	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
		<u>법</u>
	<u>무보호</u>	
		·
	② (현행과 같음)	
제	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1. (현행과 같음)	
:	<u>2. 법무보호</u>	
	3. ~ 6. (현행과 같	
제	18조(범죄예방 자	
	①	
	<u>법무보</u>	<u>호사업</u>

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36조(<u>갱생보호사업자</u> 등의 원 조와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원호와 제35조에 따른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제6 7조제1항에 따라 <u>갱생보호사업</u> 허가를 받은 자,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숙식 제공이나 그 밖의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 제회 요청) ① (생 략)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세36조(<u>법무보호사업자</u> 등의 원
조와 협력)
법무보호사업
세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
회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법무보호지원이 제공된 사람의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보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무보
호지원이 개시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기관에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

<신 설>

<신 설>

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5(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기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관련 자료의 열람, 전산망 이용등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이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는 범위,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5장 갱생보호

제1절 갱<u>생보호</u>의 방법 및 개시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 저 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다.

- 1. ~ 5. (생략)
-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 7. · 8. (생략)
-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 ② (생략)
-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 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 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 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갱생보 호활동을 위하여 갱생보호시설 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 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지

①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 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 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 가를 받은 자 또는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u>다.</u>		
	제5장	법무보

제5장 <u>법무보호</u>
제1절 <u>법무보호</u> 의 방법 및 개시
제65조(<u>법무보호</u> 의 방법) ① <u>법무</u>
<u>보호</u>
1. ~ 5. (현행과 같음)
6. 법무보호
7. · 8. (현행과 같음)
9 <u>법무보호</u>
② (현행과 같음)
③
ээ д
<u>법무보호</u>
<u>법무보</u>
<u>호법무보호</u>
 세 및 비 후 기 서
④ <u>법무보호시설</u>
제66조(<u>법무보호</u> 의 신청 및 조치)
① <u>법무보호</u>
<u> </u>
법무보호
<u> </u>

<u>갱생보호</u>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u>갱생보호</u>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 ① <u>갱생보호사업</u>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 ② 법무부장관은 <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 일 수 있다.
-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u>갱생보호사업</u>에 필요한 경제 적 능력을 가질 것
 - 2. <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신청자 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u>법무보호</u>
② (현행과 같음)
③
법무보호
제2절 법무보호사업자
제67조(<u>법무보호사업</u> 의 허가) ①
법무보호사업
②법무보호사업
제68조(허가의 기준)
<u>법무보호사업</u>
—————————————————————————————————————
1. <u>법무보호사업</u>
1. 日 立工 日
2. 법무보호사업
 □ 日 1 立 文 1 日

- 3. <u>갱생보호사업</u>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제69조(보고의무) <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 제70조(<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 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u>갱생보호사</u> 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2. <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생략)
 - 4. 정당한 이유 없이 <u>갱생보호</u>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3. <u>법무보호사업</u>
제69조(보고의무) <u>법무보호사업</u> -
~~~~~. 제70조( <u>법무보호사업</u> 의 허가 취
소 등)
· 
 1 <u>법무보호사</u>
<u>업</u> 2. <u>법무보호사업</u>
3. (현행과 같음) 4법무보호
<u>사업</u>

이내에 <u>갱생보호사업</u>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u>갱</u> 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5. · 6. (생략)

- 제70조의2(청문) 법무부장관은 제 70조에 따라 <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u>갱생보호사업</u>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 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① ·
  - ② (생략)
  - ③ 이사는 <u>갱생보호사업</u>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 나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 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 ④ (생 략)

제79조(임원의 해임) ① (생 략)

<u>법무보호사업</u>
법
무보호사업
5. • 6.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청문)
<u>법무보호사업</u>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u>법무보호사업</u>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무보호사업</u>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임원의 해임) ① (현행과

-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1. <u>갱생보호사업</u>에 열성이 없다 고 인정될 때
- 2. · 3. (생략)
- 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갱생보호
  - 2. <u>갱생보호제도</u>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
  - 3. <u>갱생보호사업</u>을 위한 수익사 업
  - 4. (생략)
- - ② · ③ (생 략)
- 제86조(<u>갱생보호기금</u>의 설치) <u>갱</u> <u>생보호사업</u>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 에 <u>갱생보호기금(</u>이하 "기금"이

같음)
②
· <u>.</u>
1. <u>법무보호사업</u>
2.・3. (현행과 같음)
제82조(공단의 사업)
<u>1. 법무보호</u>
2. <u>법무보호제도</u>
3. 법무보호사업
4. (현행과 같음)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①
<u>법무보호사업</u>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법무보호기금의 설치) 법
법무보호기금

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절 <u>갱생보호사업</u>의 지원 및 감독

- 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u>갱생보호사업</u>에 대하 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 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6조(수익사업)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u>갱생보호사업</u>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 을 <u>갱생보호사업</u>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생 략)
  - ②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 닌 자는 <u>갱생보호회</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제4절 <u>법무보호사업</u> 의 지원 및
감독
제95조(조세감면)
<u>법무보호사업</u>
제96조(수익사업) ①
법무보호사업
<u> </u>
·
<u>.</u>
②
2)
법무보호사업
<u>법무보호사업</u>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 _ , .
②
법무보호회
<u> </u>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u>갱생보호사업</u> 명목 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 2. <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u>갱생보호사</u>
   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
- 3. 4. (생략)

제99조(벌칙)
1 ND N = NA
1. 법무보호사업
<u>법무보호사업</u>
2. 법무보호사업
<u>법무보호사</u>
<u>업</u>
3. • 4. (현행과 같음)